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결원이 없는 직렬의 전입 부적정

기 관 명 경기도

관 계 기 관 구리시

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.

「구리시 행정기구 정원 및 정원 조례」 제12조에 따르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·직종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구리시에서는 지방○○○○ 전입과 관련하여 시장 지시(경기도로부터 전입을 받고 7월 정기인사시 구리시 직원 1명을 전출하는 조건부 교류 공문 발송)에 대하여 ○○○○○○ ○○○는 2회에 걸쳐(날짜 미상) 정·현원상 지방○○○○에 대한 결원이 없어 전입시 ○급 정원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전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

구리시장은 2016. 5. 14.경에 ○○○○○○에게 경기도청 소속 지방○○○○ ○○○○에 대하여 구리시로 전출 동의 협의 요청서를 경기도로 발송하도록 지시하자

○○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, ○○○○과 상의하여 관련 문서를 경기도로 발송(○○○-○○○○○)하였다.

경기도는 소속 공무원(지방○○○○ ○○○)의 구리시로의 전출에 대한 동

의 회신(○○○-○○○○○) 후 같은 날 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을 구리시로(○○○-○○○○○) 전출하였다.

이 과정에서 구리시는 7월경 예정된 경기도 정기인사시 구리시 소속 ○급 공무원 1명을 경기도 또는 도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일방 전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 사항임을 주장하였으나

2016. 6. 2. 감사일 현재까지 구리시의 ○급 정원이 과원상태(정원 42명, 현원 43명)로 유지하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다.

조치할 사항 구리시장은

정·현원 운영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라며, 향후 정원을 과원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